

진로취업센터 운영규정(4-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건양대학교 진로취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6)

제2조(사업) 본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 12. 6)

1. 진로 및 취업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2. 진로 및 취업 관련 상담 지원
3. 취업활성화 정책수립에 관한 업무 지원
4. 취업홍보에 관한 업무 지원
5. 취업처 개발, 취업정보 수집활동, 제공 및 추천
6. 취업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지원
7. 글로벌인재양성프로그램 업무
8. 해외인턴/취업지원프로그램 업무
9. 기타 센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3조(센터장) ① 센터는 원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12. 6)

②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8. 12. 6)

제4조(주임교수) ① 본 센터는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교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 12. 6)

② 주임교수는 센터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보좌한다.(개정 2018. 12. 6)

제5조(교직원) ① 본 센터는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담당직원을 둔다.(개정 2018. 12. 6)

② 담당직원은 취업교육지원, 해외취업지원, 인력개발 등으로 업무를 분장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① 본 센터의 기본 방침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12. 6)

②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센터장, 본 센터 주임교수, 본 센터 팀장을 포함하여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8~10인의 교수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한다.(개정 2018. 12. 6)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간사는 센터 팀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센터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진로 및 취업 관련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3. 본 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4.04.10.)
5.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총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